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토론회

-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14시
- 장소 : 이룸센터 회의실1(여의도)
- 주관 : 일과건강
- 주최 : 송옥주의원실(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의원실(정의당) ·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자료집 목차>

토론회의 취지	5
인사말 <송옥주 의원>	7
인사말 <강은미 의원>	10
발제 <한국 야간노동의 건강영향과 개선방향>	12
토론 1 <택배 야간노동 문제와 개선방안>	27
토론 2 <야간노동 문제와 개선과제 :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42
토론 3 <국내 노동법에서의 야간노동 제한 가능성>	49
토론 4 <고용노동부에서 고려하는 야간노동 규제방향>	57

<토론회 순서>

1. 인사말

- ▶ 각 의원실
- ▶ 구광故장덕준 노동자 유족

2. 토론회

○ 좌장 : 박석운(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표	발표자
발제	한국의 야간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임상혁(녹색병원 원장)
토론1	택배 야간노동실태와 피해 양상	이조은(참여연대 선임간사)
토론2	야간노동 문제와 개선과제 : 인 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연 구위원)
토론3	국내 노동법에서의 야간근무 제 한 가능성	정병욱(변호사, 과로사예방 센터소장)
토론4	고용노동부에서 고려하는 야간노 동 규제방향	김정연(고용노동부 산업보 건과장)

토론회의 취지

○ 국제암연구소(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각성 능력을 떨어뜨려 사고유발 가능성을 높이며 수면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각종 기왕력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의 국민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매년 5,2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사망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나 시대를 역행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보인다. 대표적으로 ‘총알배송’, ‘당일배송’이라는 슬로건들이다. 쿠팡, 마켓컬리, 그 외 다른 배송업체에서도 보인다. 이는 신종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결과 작년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가 수없이 사망했다.

○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장덕준 노동자의 부모는 최근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규제는 야간근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위험하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야간노동 시간에 있어서는 연장근로 금지, 월 야간노동 일은 14일 이내로 제한,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 조절, 주간보다 긴 휴게시간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혹서기나 혹한기의 작업장 적정 온도 유지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 본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야간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사말



송옥주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경기 화성(갑)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 해주신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박석운·진경호 공동대표님과 일과건강 양길승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해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할 정도로 과로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과로사로 추정돼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병 산업재해’를 신청한 인원은 2017년 576명, 2018년 612명, 2019년 7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지난 5년간 1,113명에 달합니다.

과로사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야간·교대근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뇌·심혈관계 질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직종은 경비노동자와 같은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였고,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음식 및 숙박업’ 처럼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야간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 업종들로 나타났습니다.

야간·교대근무가 과로사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07년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야간·교대근무를 발암물질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관련 연구에서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군은 낮 근무군보다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1.4배 높고,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위험도 2.8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야간·교대근무에 따른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달 최대 야간노동 시간을 규제하고, 야간 근무를 2일 이상 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의 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처럼 건강지표가 안 좋은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여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과로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종성 의원님께서서는 고용노동부에 과로사등 방지시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의원(정의당)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야간노동이 과로사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규제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강화 등 국민적 수준의 인식개선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음식배달이나 물품배송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량 증가를 가져왔고 충분한 인력증강, 시스템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은 더욱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오랜 시간 야간노동 등 과도한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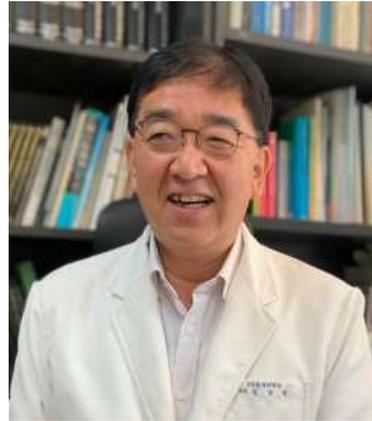
'17년 기준 택배노동자의 92.7%가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며, 1일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12분이었습니다. 또한 48.8%가 1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성수기의 경우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근무시간은 이보다 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근래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업체 간 경쟁으로 배송시간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야간노동도 함께 증가했을 것입니다.

야간노동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택배노동자의 경우 저녁 근무를 비롯한 밤 근무 비중이 타 직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7~9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2.94배 높고, 주 5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사람이 5년 이내 사망하는 가능성은 2배가 넘습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은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8년~'20년7월까지 140명의 경차량 운수업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년 1월~7월까지 업무상 질병 승인 610명 중 사망자는 29.3%(179명)에 달했습니다.

장시간 과도한 노동은 그 자체로 노동자와 그 노동자 가족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야간노동이 과로사의 주범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야간노동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및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하여 국회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개선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한국 야간노동의 건강영향과 개선방향



임상혁(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녹색병원 원장)

한국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과 개선방안

녹색병원 원장
임상혁(MD. PhD)

목차

- 야간노동/장시간노동 이란
- 야간노동의 건강상 위험
- 장시간 노동의 건강상의 위험
- 야간노동 + 장시간 노동의 건강상의 위험
- 장시간노동의 실태
- 교대노동의 실태
- 야간노동의 실태

2

한국의 장시간 노동



자료: 김유선. (2017).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KLSI Issue Paper, p. 4.

한국은 OECD평균보다 2개월, 미국보다 1개월, 독일보다 4개월 더 일한다.

3

근로 기준법 개정 (2018년 2월)

- 과거:1주의 최장 근무 시간은 68시간(기준 근로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이상-노동부 행정 해석
- 개정안:1주간의 최대 노동 시간은 연장 근로를 포함해도 52시간을 넘길 수 없음.
- 과거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조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대상자 약 450만명.
- 개정안 : 노동시간 특례업종 5개(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 대상자 약 110만명.
- 근무와 근무 사이 Time interval을 11시간 이상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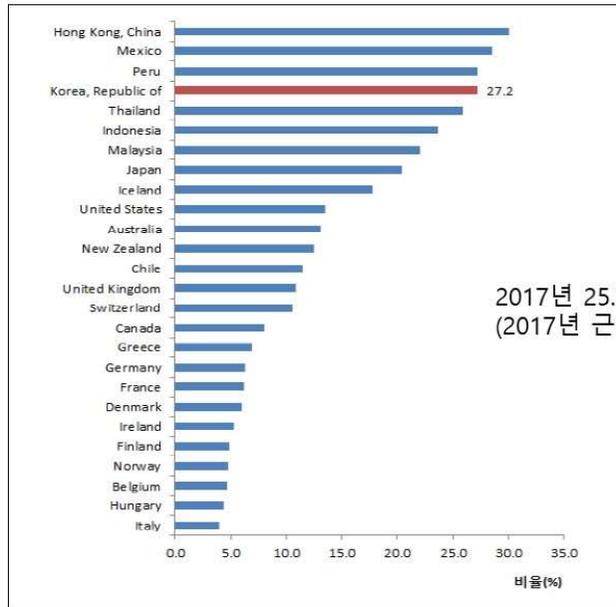
4

근로기준법 개정 후에도 남아있는 문제

- 노동시간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2016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 557만 명(전체임금 노동자의 약 30%)
- 특수고용노동자(개인도급노동자, 약 250만 명), 자영업자 (약 556만 명) 적용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와 비슷한 수준
- 52시간 이상 노동가능성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용제외 업무 노동자 : 1차 산업 종사 노동자, 감시 단속 노동자 등.
-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삭감되어 규제에 대한 순응성 감소

5

주 48시간 초과 근무 노동자들의 고용 비율(2015년 기준)



2017년 25.2%로 감소
(2017년 근로환경조사)

자료: ILO. (2018). ILOSTAT. <http://www.ilo.org/ilostat>에서 2018. 9. 27. 인출.

6

택배 노동자의 노동시간

(한국통합물류협회 학술연구, 2017)

- 택배기사의 92.7%가 주 6일 근무
- 1일 평균 노동시간 10시간 12분
- 48.8% 1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 성수기 :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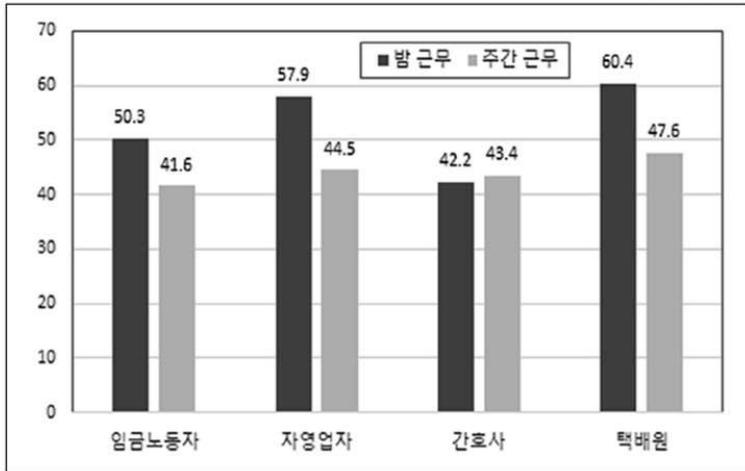
구분	목요일	화요일	성수기
수도권	12.6	13.3	14.9
오피스지역	11.4	12.4	13.1
아파트지역	11.8	12.1	13.4
주택지역	12.3	12.4	13.6
농어촌지역	12.0	13.0	14.0

자료: 2017년 한국통합물류협회 학술연구

7

(그림 4-8) 주당 근무시간(2017년)

(단위: 시간)



주: 가중치 적용.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8

야간(교대)노동

- 야간노동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노동
- 야간(교대)노동의 활용

구분	활용처
공익적 성격	• 전기, 가스, 수도, 운수, 통신, 병원 등에서 공익적 성격 때문에 야간에도 사업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생산 공정의 연속성	• 철강, 석유정제, 합성화학 등의 사업에서 원료부터 제품까지의 생산 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경영 효율성	• 생산설비를 완전 가동시키거나 영업시간을 길게 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한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위한 경우

환경미화원, 택배노동자는 무슨 이유로 야간노동을 하는가?

9

한국의 야간(교대)노동

(그림 1) 밤 근무를 하는 취업자 비율(2011, 2014, 2017)

(단위 : %)



주: 1)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2) 표준화가중치(2017년은 최종가중치) 적용.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해당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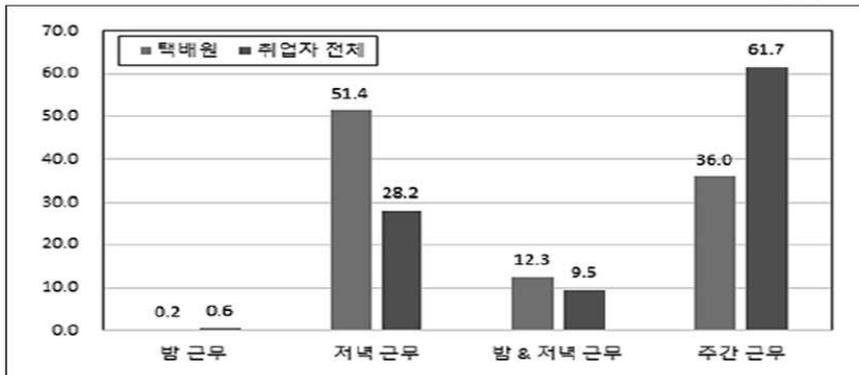
- 2011년에는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나 2014년과 2017년에는 반대로 자영업자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10

택배노동자의 야간노동

(그림 4-4) 택배원 저녁·밤 근무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1) 취업자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11

장시간 노동과 사고, 행동 변화

1. 20% 이상 장시간노동 건설노동자에게서 사고율이 1.57배(CI 1.13-2.17) 높았음.
2. 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상인 병원 노동자에게서 사고율이 1.71배(CI 1.22-2.38) 높았음.
3. 장시간 노동군이 비만, 흡연률 증가, 음주와 관련.

12

장시간노동과 건강영향

관련 요일	결과	연구방법 비교	참고문헌
하루 노동시간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7~9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2.94배(1.39-6.25)	환자대조군 연구 연령, 직업 보정	in Japan: case-control study. BMJ 1998; 317:775-80
한달 전 주당 근무시간	60시간 이상 심근경색 1.9배(1.1-3.5)	음주,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작업 형태 등 보정	in Japanese men, OEM 2002;59:447-51
휴일	월 2일 미만 심근경색 2.9배(1.3-6.5)		
초과근무	주 5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사람 5년 이내 사망하는 가능성이 2배(1.02-3.95)	연령, 결혼상태, 흡연, 음주, 질병력 등 보정	Swedish twin study, 1999

13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

- 급성과로는 그 주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 만성과로는 경우 3개월 동안 월 근로시간이 정상근무보다 20시간을 초과한 경우
- 휴일이 월 2일 미만인 경우
- 근로시간 당 업무 강도가 높은 경우

14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② 교대제 업무
 -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15

교대근무의 건강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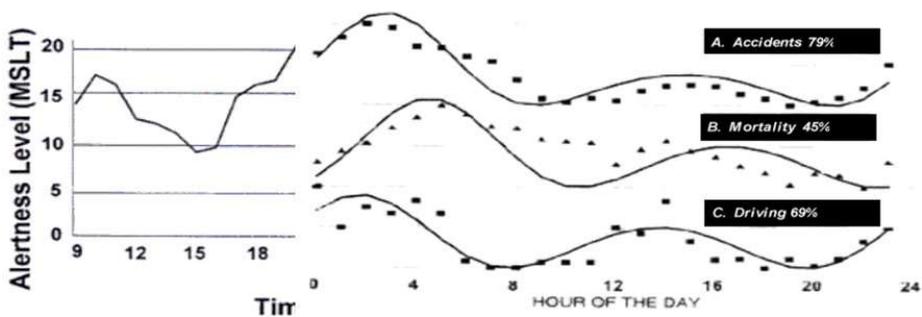
1. 생체 리듬의 파괴

- 피로
- 사고의 증가
- 위장질환
- 4. 수면 장애
- 5. 뇌심혈관계질환

2. 사회적 비동기화

16

생체리듬의 파괴



교대근무는 내적인 생체리듬과 외부 환경의 조화를 파괴..

야간근무는 비각성주기에도 각성을 강제..

생체리듬의 파괴와 각성의 강제는 만성 피로의 원인

비각성주기의 업무 시 사고 증가 및 사망 사고 증가

17

야간(교대)노동으로 인한 정상수면의 파괴

	야간근무 후 주간 수면의 경우	교대근무 후 수면의 경우
수면의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수면시, 수면시간이 감소 잠이 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감소됨 자주 낮잠을 자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번의 경우 빠른 기상으로 수면의 시간이 감소됨 Evening 시 수면 시간이 길어짐 야간 작업시에 nap이 짧아짐
수면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다가 깨는 횟수가 증가됨 수면 중 생체리듬 크기 감소 REM수면이 증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규칙적인 수면 돌입으로 수면의 질이 감소함

가면 [假眠, nap]

수면의 일종으로 시간이 짧고 수면효과가 불충분. 인간은 밤에 잠을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경우, 작업도중에 가면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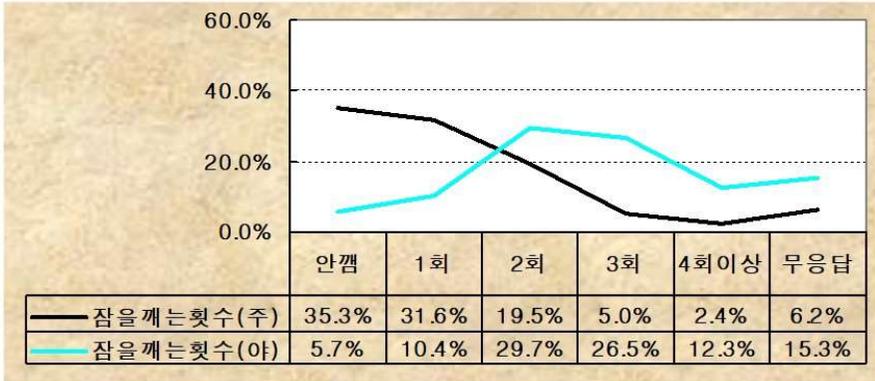
18

수면 장애

00자동차 노동자의 수면장애

		8시간이상	7~8시간	6~7시간	5~6시간	5시간미만
주간시	30세미만	4.8%	30.9%	52.7%	11.6%	
	30~35세	5.2%	31.4%	49.7%	12.1%	1.7%
	35~40세	10.1%	29.7%	48.3%	10.0%	1.9%
	40~45세	9.8%	29.1%	48.5%	10.3%	2.4%
	45세이상	15.8%	25.8%	41.6%	14.2%	2.6%
야간시	30세미만	13.3%	21.5%	37.6%	23.2%	4.4%
	30~35세	6.8%	15.7%	39.0%	25.8%	12.7%
	35~40세	5.7%	11.3%	28.6%	32.1%	22.3%
	40~45세	2.7%	8.6%	26.4%	35.0%	27.3%
	45세이상	2.7%	6.5%	23.8%	29.7%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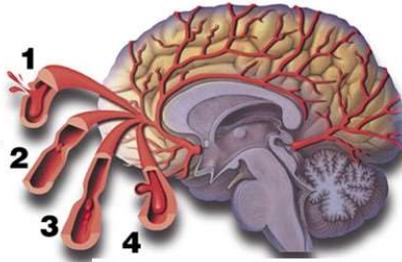
19



20

뇌심혈관계 질환

야간/교대근무는 자율신경계/호르몬 분비의 교란을 유도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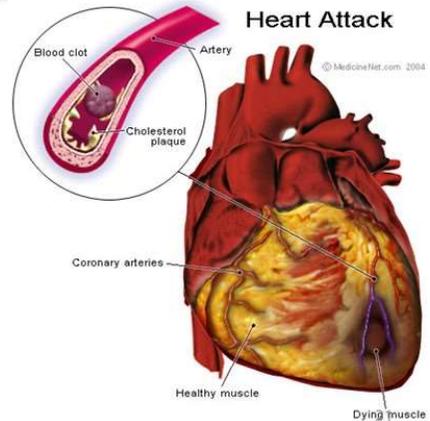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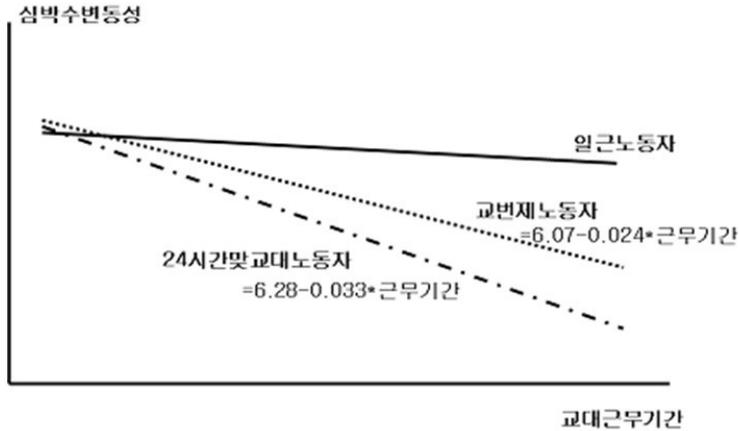
심장혈관질환

1. 심근경색
2. 협심증

뇌혈관질환

1. 뇌출혈
2. 뇌경색





22

장시간노동+교대노동

- 1995~2002년까지 기준에 맞는 75편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 (Claire C. Caruso, Edward M. Hitchcock, Robert B. Dick, John M. Russo, Jennifer M. Schmit. Overtime and Extended Work Shifts: Recent Findings on Illnesses, Injuries, and Health Behavior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ril, 2004.)
- 장시간 노동
- 장시간 교대근무1 : 10시간 또는 12시간 교대
- 장시간 교대근무2 : 10시간 또는 12시간 교대, 주간 노동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근무
- 최장시간 교대근무 : 예를 들어 택시 운전 같은 48시간 근무
- 전신 건강이 나쁘고, 사고율은 증가되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률이 증가

23

장시간 교대근무1 (15)와 건강

- 간호사에게서 요통이 증가
- 다리 통증과 소화기계 증상 호소가 증가
- 9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사고율 증가
- 병원 노동자 12시간 교대 근무 중 마지막 2시간에 주사침 좌상 등 사고 증가
- 간호사 중 음주와 흡연이 증가
- 제품 조립 업종에서 12시간 교대근무자의 상지 근골격계증상이 증가
- 12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짐
- 12시간 교대근무 + 많은 업무량 : 실수의 증가, 손의 악력 감소
- 12시간 교대근무 + 고열 작업 : 심박동수 증가
- 12시간 교대근무 + 고령(평균 45세) : 단순 조립작업의 업무 능력이 떨어짐

24

장시간 교대근무2(6) + 건강

- 석유화학 노동자에게서 정신적 긴장 감소
- 병원 노동자에게서 모든 근골격계질환 증가
- 8시간 3교대(40시간/주) → 12시간 맞교대(42시간/주) 전자 업체 노동자에게서 건강 문제 증가, 잠자기 위해 음주, 흡연 증가, 실수 증가.
- 중환자실 간호사에게서 실수나 실수 할 뻔한 경험(95.5%), 피로, 근무에 영향.
- 17개 제조업 노동자에게서 조기교대의 경우 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통증, 피로증상 증가, 작업속도 감소,
- 광산노동자 : 심박수 늦어짐.

25

개선 방안

- ILO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야간(교대)노동 원칙
 1. 충분한 휴식기간의 확보
 2. 노동 시간 및 노동 강도의 감소
 3. 인력 확충 : 야간 노동에 많은 인력 투입 의미는 아님
 4. 의학적 조기 진단 및 조치, 치료

26

근무 스케줄에 대한 고려

1. 고정된 야간근무 제한 : 월 야간노동은 14일 이내로 제한
2.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해서 한 경우 : 48시간 이상의 휴식보장
3. 연속적인 야간근무의 최소화 : 3일 이하로 제한
4.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5. 휴가 후 장기간 근무는 제한
6. 오버타임 근무는 제한 : 8시간 근무가 원칙
7. 정기적인 근무 스케줄 (부탁으로 땀뻘은 자제)
8. 휴식시간은 철저히 엄수
9. Nap 시간, 장소 보장 : 20~30분 사이잠 시간 부여

27

노동 강도 분배에 대한 고려

1. 노동자의 각성 주기에 따른 노동 강도의 분배
2. 야간 근무시 노동강도 최소화

작업 환경에 대한 고려

1. 적당한 조명
2. 쾌적한 공기
3. 적당한 온도 : 27도 이하
4. 낮은 소음
5. 야식은 뜨겁거나 미지근한 음식

그 외...

1.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2. 교대 시작 전 일상적인 운동
3. 완화 기법 훈련
4. 과도한 흡연, 음주, 커피 제한
5. 태양광선에 대한 노출
6.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확충
7. 심리상담

택배 야간노동 문제와 개선방안



이조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1. 발제에 대한 의견

- 발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건강상의 위험에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음. 발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노동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12분임. 반면, 2020.09.1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주최한 <토론회 :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 마련>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1시간 53분(주당 노동시간 71.3시간)임.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2020년 기준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연간노동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3,707시간임. 이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3위인 한국 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1,927시간, 2020년 기준) 보다 약 2배가 많은 수치임.

- <토론회 :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 마련>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업무상 사고로 연간 45%가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재해율(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해)은 25.9%임. 2019년 기준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재해율인 0.5%의 50배 이상임.

- 발제에는 택배노동자의 밤 근무 비율이 0.2%, 밤&저녁 근무비율이 12.3%로 취업자 전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는 배송 전에 택배물건을 분류하는 분류작업 업무를 오전 7시부터 시작함.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2시간가량을 더 일한 상태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것이므로 야간노동으로 인한 생체 리듬의 파괴와 건강영향 정도는 일반 취업자 보다 훨씬 심각할 것임.

- “환경미화원, 택배노동자는 무슨 이유로 야간노동을 하는가?” 라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함. 환경미화나 택배 업무는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한 야간근로인 공공서비스(군대, 경찰, 병원, 교정, 소방 등)가 아니고, 이익과 편리를 위해 강요된 노동임. 야간노동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익과 편리를 위해 강요된 야간노동을 최대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함.

- 본 토론문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및 과로사고 현황'과 '과로로 쓰러진 택배노동자의 주요 야간노동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택배 야간노동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택배 야간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택배노동자 과로사 및 과로사고 현황

〈표 7〉 택배노동자 과로사 현황(2020.1.1. ~ 2021.6.3. 기준)

no	날짜	택배업체	나이	상황
1	2020 1/13	우체국	33	새벽에 거실에 나오다가 쓰러져 의식 불명 후 사망
2	3/12	쿠팡	47	배송 중 빌라계단 4~5층 사이에 쓰러져 사망
3	4/10	CJ대한통운	33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
4	5/4	CJ대한통운	42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날 잠을 자던 중 아침에 사망
5	5/28	쿠팡	40대	쿠팡 물류센터 내 화장실에서 새벽 2시 40분경 쓰러져 119에 후송되었으나 사망
6	6/1	쿠팡	39	쿠팡천안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조리 및 청소를 담당. 급식실 바닥 청소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7	6/11	로젠택배	31	배송 중에 쓰러져 사망
8	7/5	CJ대한통운	47	평소 고통을 참다가 일요일에 응급실에 실려 가 혼수상태 후 사망
9	8/16	CJ대한통운	47	‘택배 없는 날’ 휴가 기간에도 터미널에서 잡초제거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
10	10/8	CJ대한통운	48	배송 도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껴 곧바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
11	10/12	쿠팡	27	밤샘 근무를 마친 뒤 퇴근 후 자택에

no	날짜	택배업체	나이	상황
				서 사망. 사망 전 8~9월 주 70여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12	10/12	한진택배	36	고인이 출근하지 않아 동료들이 집을 방문하여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함. 사망 4일 전 새벽 4시 28분까지 배송을 했던 것으로 확인됨.
13	10/20	CJ대한통운	39	밤 11시 50분쯤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친 후 주차장에서 설치된 간이휴게실에서 쓰러졌고 119로 병원에 일산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새벽 1시경에 사망
14	10/22	건영정기 화물	40	저녁 10시경 욕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함.
15	10/27	한진택배	59	트레일러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
16	12/23	롯데택배	34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
17	2021 1/11	쿠광	50대	새벽 5시 20분께 쿠광물류센터 동탄점 지상주차장 1층 화장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18	3/6 발견	쿠광	48	심야새벽배송 전담하던 택배노동자. 입사 이후 매일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다가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됨.
19	3/6	쿠광	40대	3월 5일 오후 11시까지의 근무를 끝내고 귀가한 뒤 새벽에 쓰러져서 사망

no	날짜	택배업체	나이	상황
20	3/13	로젠택배	51	터미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3.15. 밤 11시 20분 뇌출혈로 사망
21	3/24	쿠팡	42	오후 1시경 운전하던 쿠팡 택배차량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짐.
택배 노동자 과로 사고(사망 외) 현황				
1	2020 12/7	롯데택배	미상	배송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긴급 스텐트 시술로 의식회복.
2	12/14	한진택배	50대	택배차량 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짐.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됨.
3	12/22	한진택배	40세	야간배송이 잦았으며 재래시장에서 배송 중 뇌출혈로 쓰러짐. 뇌수술 4차례 받았으나 의식불명.
4	2021 1/12	한진택배	50대	분류작업을 하는 도중 뇌출혈로 쓰러짐. 119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뇌수술 진행.
5	2/9	CJ대한통운	45세	밤 10시까지 택배업무를 마치고 귀가 한 이후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다 귀가 2시간 만에 뇌출혈로 쓰러짐.
6	2/17	롯데택배	60세	새벽 2시 30분 자택에서 쓰러져 119에 후송됨.
7	3/24	CJ대한통운	59세	밤 10시 10분경 구토 후 화장실에서

no	날짜	택배업체	나이	상황
				들어간 후 뇌출혈로 쓰러짐.
8	5/23	로젠택배	44세	배송 중 몸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갔으나 코로나 검사로 대기 중 병원 밖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 수술.

* 출처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 정부나 택배사의 공식 집계자료가 아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집계한 자료로, 자료 취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과로사·과로사고 택배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21명이며, 20대 1명·30대 7명·40대 10명·50대 3명으로 대부분 3~40대임. 과로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평소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쿠팡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주 70~80시간 정도 일한 것으로 조사됨. 통계화되진 않았지만, 과로사·과로사고 택배노동자의 상당수가 심각한 수준의 야간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짐.

- 2020.8.13. 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진택배를 비롯한 4개 주요 택배사와 심야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음. 같은해 10월에는 택배사들이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고, 택배 현장에 분류작업 지원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과로사 대책을 내놓음. 하지만, 택배사가 분류작업 지원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투입비용을 택배대리점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택배사의 과로사 대책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 택배노동자 16명이 과로사(8명)하거나 과로로 쓰러짐(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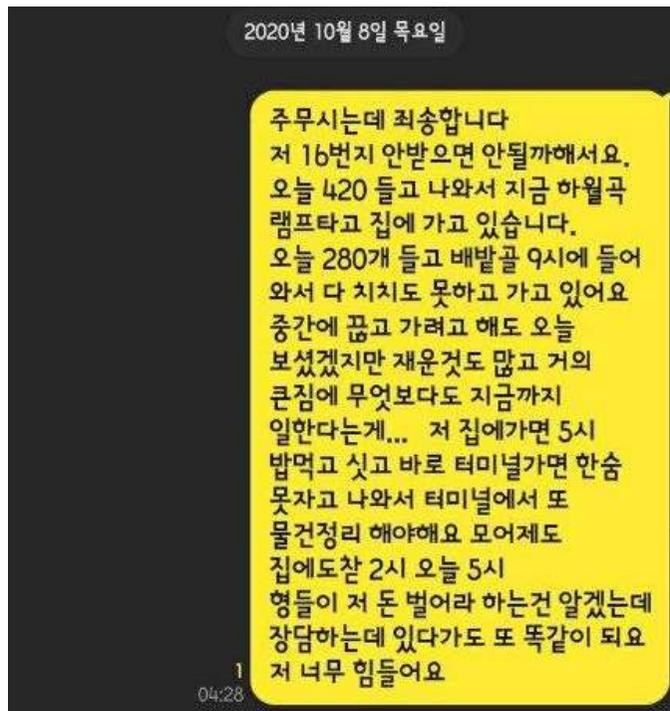
3. 과로로 쓰러진 택배노동자의 주요 야간노동 사례

(택배배송 / 물류센터 업무 / 간선차 운행)

1) 36세, 한진택배 노동자 (2020.10.12.)

- 2020.10.12. 고인이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고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숨겨 있는 것을 확인함. 자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측됨. 병원에서 밝힌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심장질환임.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인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과 비슷함. 고인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다고 함.

<그림> 고인이 숨지기 4일 전 남긴 SNS메시지



- 고인이 숨지기 4일 전 새벽에 동료에게 야간노동의 고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보냄. 해당 메시지는 새벽 4시 28분에 발송됐으며, 고인은 해당 시간까지 배송업무를 진행하였음. 오전 7시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 21시간 이상을 일한 것임. 메시지에는 전날에도 새벽 2시까지 배송했다는 내용이 담김. 고인은 해당 메시지를 남긴 지 4일 만에 과로로 사망함.

- 제대로 된 휴식시간은커녕 식사할 시간도 갖기 어려운 택배노동의 특성상, 장시간·야간노동으로 오는 건강영향은 더욱 심각했을 것임. 아무리 힘들어도 택배물량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택배노동의 현실도 SNS에 드러나 있음.

2) 41세, 한진택배 노동자 (2020.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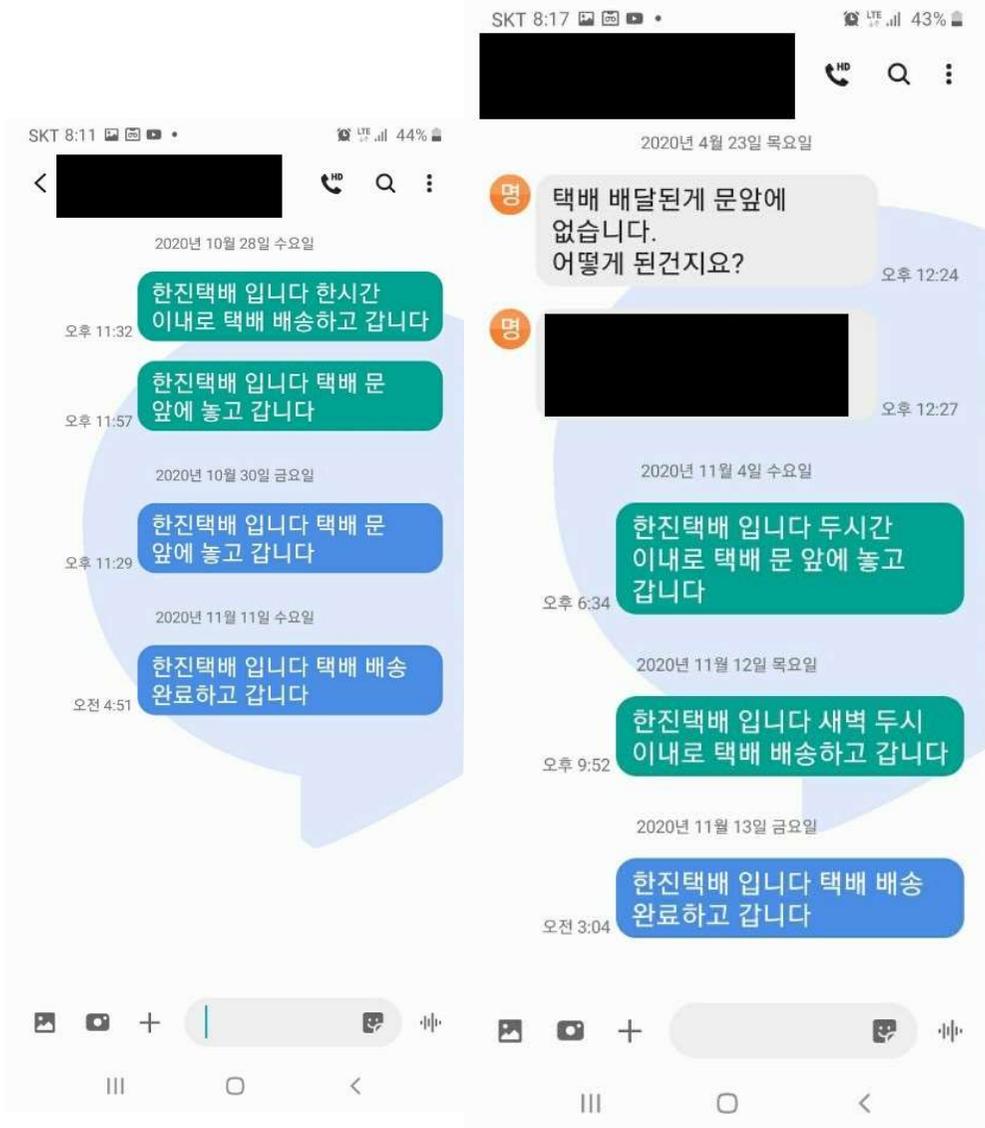
- 2020.12.22. 재래시장에서 택배 배송 중에 뇌출혈(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짐. 쓰러지자마자 시장에 있던 시민의 도움으로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됨. 뇌수술 4차례 받았으나 의식불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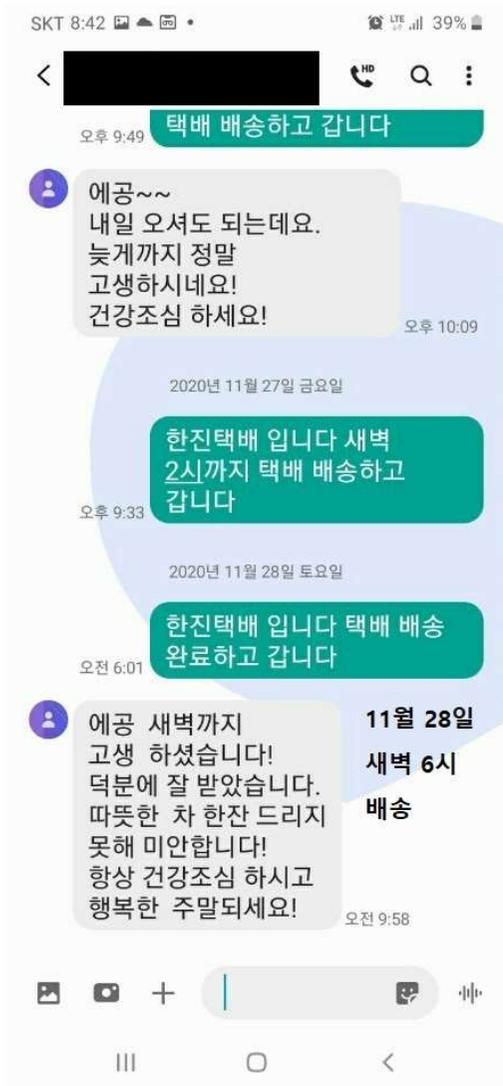
- 과로사고 노동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과로사고 노동자는 평소 밤 10시가 넘어 새벽까지 배송했던 것으로 나타남. 11월 27일의 경우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23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남.

과로사고 노동자가 고객에게 배송완료문자를 보낸 시간

11/3화	오후 11시 34분	11/26목	오전 12시 24분
11/4수	오전 12시 7분	11/27금	<u>오전 06시 1분</u>
11/5목	오후 11시 38분	12/1화	오후 10시 43분
11/6금	오전 12시 46분	12/2수	오후 11시 28분
11/10화	<u>오전 04시 51분</u>	12/3목	오전 12시 6분
11/11수	오전 01시 8분	12/4금	오전 12시 7분
11/12목	오전 03시 4분	12/5토	오후 11시 23분
11/13금	오전 02시 21분	12/9수	오후 11시 31분
11/14토	오전 01시 51분	12/10목	오전 12시 57분
11/17화	오전 01시 2분	12/11금	오후 11시 1분
11/18수	오후 10시 55분	12/12토	오후 10시 30분
11/19목	오전 12시 4분	12/15화	오전 12시 37분
11/20금	오후 10시 51분	12/17목	오후 11시 39분
11/21토	오후 11시 18분	12/18금	오전 12시 59분
11/24화	오전 02시 18분	12/19토	오전 12시 33분
11/25수	오전 01시 18분		

<그림> 과로사고 노동자의 새벽배송 문자(11월 11일 오전 4시 51분 배송, 11월 13일 오전 3시 4분 배송, 11월 28일 오전 5시 18분, 6시 배송)





3) 27세, 쿠광 물류센터 노동자 (2020.10.12.)

- 2020.10.12. 쿠광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에 귀가함. 집 욕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부모님이 발견하여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짐.

- 1년 6개월 동안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용직 신분으로 야간노동을 해 왔음. 물건이 실린 상자를 포장 작업대로 가는 레일 위에 싣는 현장 지원 업무를 맡았음. 200kg에 달하는 상자 더미를 옮겨야 하는 고강도 업무였다고 함.

- 고인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사망 전 일주일 동안 노동시간은 62시간 10분이었고, 숨지기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58시간 18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음. 몸무게 75kg이던 고인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15kg가 빠질 정도로 고강도, 장시간 야간 노동에 시달림.

4) 39세, CJ대한통운 간선차 운전노동자 (2020.10.20.)

- 2020.10.20. 밤 11시 50분쯤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잠시 주차장에서 설치된 간이휴게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119로 병원에 일산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새벽 1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됨.

- 고인은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과 파주허브터미널에서 대형 트럭으로 택배물품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음. 유가족 측의 확인, 고인의 근무일지에 따르면 과로사 전 일주일 근무량은 다음과 같음.

10.12.(월) 오후 4시경 출근 후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

10.15.(목) 오후 2시경 귀가 잠시 휴식 후 오후 4시경 다시 출근

10.15.(목) 오후 4시부터 10.17.(토) 오후 1시까지 쉬지 못하고 근무 후 퇴근

10.18.(일) 오후 2시경 출근하여 10.19.(월)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10.19.(월) 오후 5시경 다시 출근

10.19.(월) 오후 5시부터 근무하다 10.20.(화) 밤 11시 50분경 쓰러짐

- 고인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 없이 불규칙 장시간 노동이 시달린 것으로 파악됨. 배차명령이 떨어지면 집에서 쉬다가도 바로 출근해서 운행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4. 택배 야간노동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제자는 야간노동 개선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

- 근무 스케줄에 대한 고려(△고정된 야간근무 제한 : 월 야간노동은 14일 이내로 제한,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해서 한 경우 : 48시간 이상의 휴식보장, △연속적인 야간근무의 최소화 : 3일 이하로 제한,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휴가 후 장기간 근무는 제한, △오버타임 근무는 제한 : 8시간 근무가 원칙, △정기적인 근무 스케줄 (부탁으로 땀땀은 자제), △휴식시간은 철저히 엄수, △Nap 시간, 장소 보장 : 20~30분 사이잠 시간 부여)

- 노동 강도 분배에 대한 고려(△노동자의 각성 주기에 따른 노동 강도의 분배, △야간 근무시 노동강도 최소화). 작업 환경에 대한 고려(△적당한 조명, △쾌적한 공기, △적당한 온도 : 27도 이하, △낮은 소음, △야식은 뜨겁거나 미지근한 음식). 그 외(△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교대 시작 전 일상적인 운동, △완화 기법 훈련, △과도한 흡연, 음주, 커피 제한, △태양광선에 대한 노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확충, △심리상담)

- 발제자의 개선방안에 적극 동의함. 사업장은 해당 방안을 준수해야 하

며, 정부와 국회는 사업장이 해당 방안들을 준수할 수 있게 하루빨리 법제도에 나서야 함. 이에 더해 택배노동자의 야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노동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1) 무임금 분류작업 문제의 온전한 해결

- ‘분류작업’은 허브터미널에서 간선차를 통해 서브터미널로 배송된 택배물건을 택배노동자가 담당 구역별로 나눠 택배차량에 싣는 작업을 말하며, 택배노동자들의 업무 중 약 43%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보수가 없는 무임금 노동임. 택배 분류작업은 사실상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핵심원인으로,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면 택배노동자의 야간노동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

-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노사정·국회·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의기구는 2021년 1월 21일에 1차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에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김.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비율·시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택배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고, 2021년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2차 합의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착수함. 2차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차 합의 이후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지원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투입비용을 택배대리점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택배사가 온전히 분류작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함. 택배운임 인상 논의를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는 택배사의 이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분류작업 지원 등)를 위한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함.

2) 당일 배송 규제

- 택배사들이 총알배송,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배송 속도경쟁을 하면서 택배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강해졌음.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빠른 배송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들도 원치 않음. 국민권익위원회의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결과(2020.11.10.)>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 처우가 개선된다면 배송 지연을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87.2%에 달함.

- 택배 약관에 명시돼 있는 익일배송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당일배송 경쟁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규제

-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겐 적용되지 않음.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는 장시간·야간노동의 고착화로 이어짐.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장시간·야간노동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야간노동 문제와 개선과제 :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문] 야간노동 규제 토론회 2021.6.7.

야간노동 문제와 개선과제
-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

이 정 희
한국노동연구원

시간 처분권

- 근로계약
 - 시간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임금 받는 수량적 교환
 - “계약의 논리 속에 노동은 계량적 시간으로 축소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고유한 의사를 포기하고 사용자나 그 이익대표자의 지시에 따를 준비를 한다. 법률은 근로시간의 정의 속에 이러한 사정을 승인한다.”(Supiot, 2016: 408)
- 실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에 놓여져 그 지시에 따르는 시간으로서 개인적 사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프랑스 노동법전 L3121-1)
- 자본주의 노동력 거래: 종속관계에서의 **시간 처분권 정당화**

2

초연결 소비사회와 야간노동

- 인간의 노동과 자연의 시간
- 인공조명의 발명, 산업혁명, 그리고 야간노동
 - 19세기 초반부터 공장 24시간 가동 체제 구축. 12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등장(엥겔스(1845)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 야간근로 제한 입법
 - 영국 1831년 공장법: 면직물 공장서 20세 이하 19:30-05:30 노동 금지
 - 국제노동기구ILO 제1호 협약(1919)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
- 초연결사회와 야간노동
 - 24시간 노동력 총동원 사회: **시간 처분권의 전면화**

3

시간관리



Unit
Per
Hou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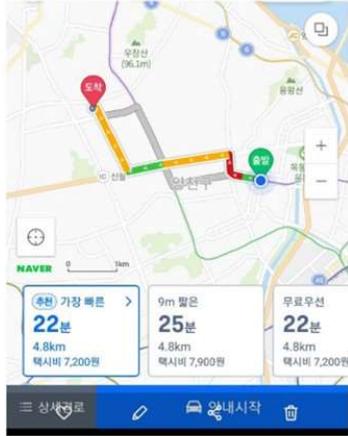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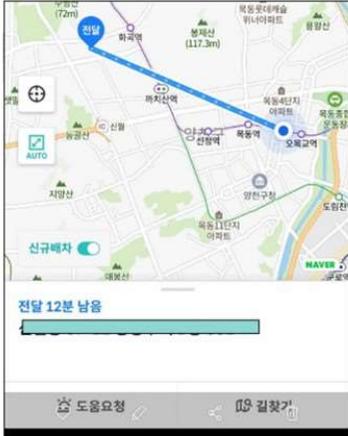
시간관리

집배부하량(업무강도) 시스템		
배달항목	1통당 배달시간	1시간 산출
일반우편물	2.1초	1,714통
특수통상(등기 등)	2.8초	129통
등기소포(택배)저중량	30.7초	73통
등기소포(택배)고중량	49.0초	117통
개별픽업	178.5초	20통



5

시간관리



자료: 라이더유니온

“알고리즘 = 취업규칙”

6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 제2장 근로계약
- 제3장 임금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장 기능습득
- 제8장 재해보상
- 제9장 취업규칙
- 제10장 기숙사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2장 벌칙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같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를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①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1. 화학적 인자
2. 분진(7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8

경계

- 결핍된 어둠(밤)에 대한 욕망 vs. 인공조명 없는 삶의 불편함
- 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것 **VS.** 이기적 욕망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

공공서비스형	기술적 필요형	이윤추구형
야간의 필요성을 위해 누군가는 대기해야 하는	설비가동 멈출수 없는. 사고 발생시 시민 안녕 위협	이윤추구 향한 무한경쟁의 부산물
병원, 돌봄, 경찰, 소방, 교정, 군대 등	통신사 제어실, 발전소 제어실	제조업 교대제, IT업체, 물류배송업 등
→ 야간노동 환경 개선, 적절한 교대제, 예산·인력의 확충 필요		→ 최대한 제한. 경우에 따라 금지할 수도

9

야간노동 가이드라인

-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9.10)

항목	내용
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8시간 근무 원칙
월 야간근무 횟수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연속 야간근무 일수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야간업무량 조절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 조절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 등을 야간근무 이외의 시간으로 조정)
교육 및 훈련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근무 외 행사 참여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건강권 보호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행(연 1회)
로테이션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 보장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12

책임

- **사업주 책임:** 야간노동 위험성 관련 사업주의 정보제공 의무 부여
 - 국제암연구소(IARC) 야간노동 '2급 발암물질'로 규정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자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제공
- **소비자 책임:** 사회적 책임 확대
 - 소비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식
 - 이익과 편리 →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 영향 → 사회적 비용 증대
 - 기업 이윤추구 + 소비자 편익추구 결합의 효과 공론화 필요
- **노동법 책임:** 적용 범위 확대
 - '근로자' vs. '일하는 시민'

13

국내 노동법에서의 야간노동 제한 가능성



정병욱 변호사(과로사예방센터소장)

1. ‘야간근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3]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에 56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 근로가 되지 아니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위 법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4]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및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6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부여하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다수의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기준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다. ‘동일한 근로’ 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매 시간당 가치 평가는 같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이나 당사자의 약정 등과 같은 특별한 근거 없이 이를 달리 보는 것은 근로의 가치에 대한 자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 소수의견(이기택 대법관)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의 가치 측면에서 연장·야간근로 1시간의 가치가 기준근로시간 내의 주간근로 1.5시간 근로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와 구분되는 연장·야간근로가 가지는 위와 같은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가 일반적으로 연장·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와 연장·야간근로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근로’ 를 제공한 시간이라고 전제한 채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다수의견은 그 전제부터 타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연장·야간근로의 가치가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의 가치에 비하여 더 우월함을 밝힌 선례의 태도와도 맞지 않는다.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이러한 가치 평가를 고려하면, 고정수당 중 연장·야간근로의 시간당 대가는 기준근로시간 내의 주간근로의 시간당

대가에 비하여 최소한 1.5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고정수당을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약정 근로시간 수 자체로 나누어서는 고정수당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 포괄임금제 판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2. ‘과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돌연사의 경우는 그 유인이 외상, 과로, 정신적 충격 등이라는 것이고, 한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와 청장년급사증후군처럼 사후 검사에서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의 입증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바, 사후검사에 의하여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각 유인은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망시 있었던 것으로 입증되는 유인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망인은 건강한 남자로서 사망 당시 밀린 공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력소집통지서 교부, 제1국민역 실시조사, 신규민방위대원훈련통지서 교부 등 과중한 업무로 과로한 상태였으며 위 사망은 돌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위 망인의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

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PVC 파이프(10 내지 30kg)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갑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11일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2차 재해) 사안에서, 망인은 1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세의 고령으로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1차 재해 이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도,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1차 재해 발생 후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서비스업 야간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2019. 3. (이정희, 박제성, 박종식, 이승렬)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

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야간노동의 예외적 허용 원칙
-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단체협약 역할 강화
-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 별도 신설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총 노동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야간 노동 규율

토론 4

고용노동부에서 고려하는 야간노동 규제방향

김정연(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